

옆면보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(제39조의2 관련)

1. 옆면보조등의 설치기준

가. 좌·우에 각각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

나. 등광색은 백색일 것

다. 조사 방향

옆면보조등은 아래 방향으로 비추게 할 것

라. 작동조건

1) 옆면보조등은 주행빔 전조등 또는 변환빔 전조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점등되는 구조일 것

2) 옆면보조등은 아래 어느 하나 이상의 조건에서 작동하고 자동차 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에 도달할 때까지 자동으로 점등될 것

가) 원동기 작동 후 최초 주행전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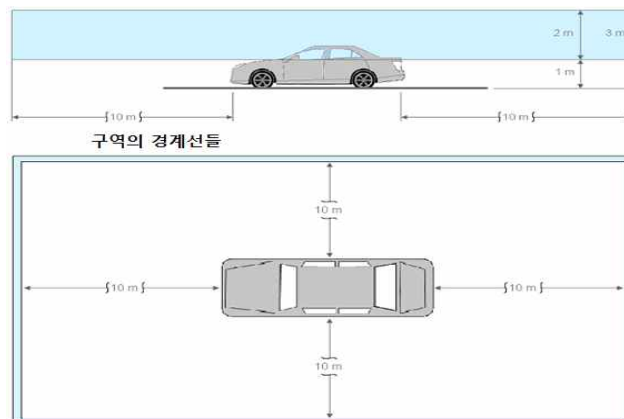
나) 자동차의 변속장치가 후진위치인 경우

다) 카메라 또는 센서를 이용한 주차보조 시스템이 작동되는 경우

3) 옆면보조등은 자동차의 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소등되어야 하고 재작동전까지 소등상태가 유지되는 구조일 것

다. 그 밖의 기준

옆면보조등의 발광면은 그림과 같이 자동차 앞면, 옆면, 뒷면 각 방향으로 10미터 거리의 수직면과 지면으로부터 각각 1미터와 3미터 거리의 수평면 구역 내에서 움직이는 관측자에 의해 발광면이 직접적으로 관측되지 않을 것



2. 옆면보조등의 광도기준

최대광도는 500칸델라 이하일 것. 다만, 다음의 최소 및 최대수직각도 범위에서 0.5칸델라 이하일 것

가. 최소수직각도

$$\psi_{\text{최소}} = \tan^{-1}(1-h)/10, h = \text{설치 높이(m)}$$

나. 최대수직각도

$$\psi_{\text{최대}} = \psi_{\text{최소}} + 11.3$$

주) 양산자동차 옆면보조등의 광도기준은 ± 20 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.